

4. 편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ひとり親家庭おやかていになったとき)

【아동 부양수당】 (児童扶養手当しどうふようてあて)

18세가 된 날로부터 처음으로 맞는 3월 31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편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 있음.)

문의 구청 육아지원과 (16, 17 페이지)

【편부모 가정 등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ひとり親家庭おやかていなどへの日常生活支援にちじょうせいかつしえん)

편부모 가정이나 남편이 사망 또는 이혼하여 혼자서 생활하고 계시는 여성이 질병이나 취직활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사 등을 하기가 어려워진 경우에 가정생활지원원을 파견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세대·시민세 비과세 세대 등은 무료.

문의 구청 육아지원과 (16, 17 페이지)

【편부모 가정 의료비 조성제도】 (ひとり親家庭医療費助成制度おやかていいりょうひじょせいせいど)

편부모 가정의 18세까지(18세가 되어 처음으로 맞는 3월 31일까지)의 자녀와 그의 부나 모, 또는 양육자의 의료비 일부가 조성됩니다. (소득제한 있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함.) 단, 생활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 등은 조성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구청 보험연금과 (16, 17 페이지)

【기타】 (その他ほか)

시영주택 모집에 우선모집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카이 시영주택 관리센터 ☎072-228-8225 FAX 072-228-8223